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안 번호	161
----------	-----

제출년월일 : 1993. 5.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사 유

-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제4조에 공무원 정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공무원 정원을 삭제 조정
(안 제4조 참조)

3. 참 고 사 항

-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_____ '93. 4. 29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공무원)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관에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 13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공무원) 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며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지방행정주사보 1명 2. 지방기능직(8등급) 1명 3. 지방고용직 2명	제4조 (공무원) 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회관에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